

<p>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2조(출석수당 등)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·안건검토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세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 또는 징수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주행세와 담배소비세 2.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중 전당 오백만원 (가산금 제외) 이상의 금액을 체납(과년도분에 한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한 자의 당해 자치구에 체납된 시세. 다만, 구세에 부과 또는 병기하여 고지되는 시세와 부과한 회계년도 폐쇄일 현재 소송계류 중이거나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시세는 제외한다. <p>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위임사무 변경에 따른 적용례)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체납된 시세부터 적용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운용·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1항제1호 중 “영 제20조제2항제1호”를 “영 제20조의2제2항제1호”로 하고, 동조동항제2호 중 “영 제20조제2항제2호”를 “영 제20조의2</p>	<p>제2항제2호”로 하며, 동조동항제4호 중 “인명구조”를 “인명구조, 부상자치료”로 하고, 동조동항제6호 중 “영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”를 “영 제20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”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</p> <p>서울특별시 세감면조례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 안 제12조의2중 “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”를 “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불가피하게 채권액 이하의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”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 세감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4. 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취득(건설업체의 부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)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.</p> <p>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12조의2(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)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(이하 이 조에서 “하도급업자”라 한다)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불가피하게 채권액 이하의 주택으로 대물변제받아 하도급업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. 다만, 그 이전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
---	---